

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 안내

(금융위원회에서 발표('18.11.28.)한 보도자료 요약)

가. 제도 개요

- 단체실손과 일반 개인실손의 연계를 통해 재직 중 실손의료비 중복가입 해소와 퇴직 후 실손의료비 보장(시행일 : '18.12.1.)

구 분	재 직 중	퇴 직 후
개인실손 중지/재개	개인실손 중지 후 단체보험 가입	개인실손 재개
단체실손의 개인실손 전환	단체실손 가입	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

나. 운영 기준

1) 개인실손 중지/재개

구 분	세부 기준
중지	신청방법 · 본인이 개인실손에 가입된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
	신청기준 · 개인실손 가입 후 1년이상 유지한 계약에 한하며, 단체실손과 중복되는 개인실손의 보장종목만 중지 가능
	중지철회 · 중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중지 철회 가능
재개	신청방법 · 본인이 개인실손에 가입된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
	재개심사 ·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시에는 무심사 재개 * 다만, 단체 및 개인실손 모두 미가입기간이 1회당 1개월, 누적 3개월을 초과하면 회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재개가 거절될 수 있음
	재개상품 · 기존 중지된 상품이 아닌 재개시점에 보험회사가 판매 또는 보유 중인 개인실손 상품으로 보장 재개 * 재개상품이 중지 전 가입한 상품과 보장내용 등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
	재개불가 · 주계약이 아닌 특약으로 가입한 개인실손 중지 후 주계약을 해지하면 중지된 개인실손도 같이 해지되어 재개 불가

2) 단체실손의 개인실손 전환

구 분	세부 기준
전환 대상	· 전환신청 직전 5년간(계속*) 단체실손 가입자(임직원에 한함) 중 개인실손에 가입 가능한 자(65세 이하) * 단체실손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, 누적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단체실손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
신청 방법	· 단체실손 종료(퇴직 등)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, 직전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 회사에 전환 신청
전환 심사	·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, 10대 중대질환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 무심사* 전환 * 다만, 아래 2가지 중 1가지라도 미 충족시 심사 - 직전 5년간 보험금 200만 원 이하 수령 & 10대 중대질병 발병이력(5년) 없음
전환 상품	· 전환시점에 해당 보험회사가 판매중인 개인실손으로 전환되고, 보장종목, 보장금액, 자기부담금 등의 세부 조건은 전환직전 단체실손과 동일 또는 유사 적용 * 전환 시 보장종목 추가, 보장금액 증액 등을 요청하면 보험회사의 인수 심사를 거쳐 보장확대 여부 결정

☞ 세부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배포(2018.11.28.)한 보도자료를 참고 바라며, 가입 보험사별 운영기준에 따라 상기 기준과 일부 다를 수 있음